행정대학원 학사・석사 연계과정 운영 지침

제정 2012. 7. 5. 개정 2020. 5. .

- 제 1 조 (목적) 이 지침은 '서울대학교 학사·석사연계과정 운영 규정'에 의해 행정대학원 학사·석 사연계과정(이하 "연계과정" 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설치 및 운영) 행정대학원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, 사범대학, 농업생명과학대학 학부생을 위한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제 3 조 (수업연한)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,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학사학위과정 : 3.5년(7개 학기)
 - 2. 석사학위과정 : 1.5년(3개 학기)
- 제 4 조 (지원 자격 및 절차) ①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자이어야 한다.
 - 1.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(당해학기 등록자)로서 5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 - 2.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.3이상이거나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.5 이상인 자
 - 3. 소속 학과(부)장 또는 행정대학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
 - ②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5 조 (선발인원) 연계과정 선발인원은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% 범위 이내에서 선발하되 구체적 인 선발인원은 제2조의 단과대학 간 협약에 따라 행정대학원장(이하 "대학원장"이라 한다)이 정한 다.
- 제 6 조 (선발시기 및 선발방법) ①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(이하 "연계과정 학생"이라 한다)는 매 학 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 - ②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, 재학 중 성적, 추천서, 연구활동계획서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.
 - ③ 대학원장은 매학기 말까지 연계과정 학생을 선발하고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제 7 조 (수강신청 및 학점이수) ①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재학 시 매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수 강신청 할 수 있다.
 - ②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서 소속 학과(부)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행정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,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- 제 8 조 (연계과정 운영 등) ① 대학원장은 연계과정 학생에게 선발된 학기 초에 대학원 과정의 지도교수를 배정한다.
 - ② 연계과정 학생은 매학기 연구활동계획서를 대학원 과정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대학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연계과정 학생은 학과를 변경할 수 없다.

- ④ 대학원장은 연계과정 학생을 위한 학사·석사 공통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⑤ 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, 학과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⑥ 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,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 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 9 조 (과정탈락한 자 등에 대한 조치) ① 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(이하 "포기자"라 한다) 는 매학기 말까지 포기 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연계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(대학원 입학 포기자 포함) 중「학칙」제79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.
- 제 10 조 (학사과정 졸업 자격 및 대학원 입학) ① 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7개 학기 이내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고,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.3이상인 자
 - 2. 당해 학기에 대학원 등록을 필한 자
 - 3. 연구활동계획서 2회 제출한 자
 - ② 제1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소속 학과(부)에 졸업 신신청서를 제출하고, 행정대학원장에는 대학원 입학지원서와 졸업신청서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 야 한다.
 - ③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.
- 제 11 조 (연계과정 학생에 대한 특례) ①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(무시험 특별전형)한다.
 - ②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 - ③ 학사과정 재학 중 행정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- 제 12 조 (세부사항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